

신학대학 학사시행세칙

제정 2003. 9. 1.

개정 2019. 4.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신학대학(이하 '본 교정')의 학사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입학, 전과, 편입

제2조(재입학) ① 학칙 제 19조에 의거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제적사유와 재학시의 학업성적 및 품행을 심사하여 2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3.1]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적 사유가 학칙 제70조(징계)에 의한 경우에는 재입학 기회를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18.3.1]

③ 재입학 허가 시기는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한하며, 재입학 원서와 서약서, 성적증명서 및 기타요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재입학은 제적 전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학년 이하에만 한하며, 자퇴일 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후에 재입학 할 수 있다.

⑤ [삭제 2018.3.1.]

⑥ 재입학이 허가된 후에도 재입학원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재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전과) 본 교정에서는 교정별, 학과별 전과를 시행하지 않는다.

제4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본교의 사제 양성 교과과정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국내·외 가톨릭계 대학 출신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5.12.24]

② 편입학 학년은 전적 대학에서의 이수학년, 이수과목, 학점수 등을 고려하여 교학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2.24]

제3장 이수학점, 학점인정, 수강신청, 교직과정, 청강

제5조(이수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6조(학년 수료학점) 다음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학년을 수료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8.3.1]

제1학년 : 32학점 이상 제2학년 : 64학점 이상

제3학년 : 100학점 이상 제4학년 : 138학점 이상(필수선택 4학점 및 세미나 2학점 포함)

제7조(학점인정) ① 신입생이 본교 입학 전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교 교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8학점 이내에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1, 2015.12.24]

②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은 본교 졸업학점의 1/2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24]

③ 학점인정신청은 학업을 시작한 학기의 개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④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기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⑤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은 본교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4]

제7의 1조(교과목 이수 면제) ① 외국인 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을 취득한 경우 필수선택(외국어) 4학점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② 교학처장은 학생의 학력 및 이력 등 객관적인 기준이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의 교과내용을 충족한 경우 해당 교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8조(수강신청) 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해당 학기에 이수할 과목을 선정한 후 신청한다.

② 수강신청기간은 매학기 개강 일주일 전부터 개강후 일주일 이내로 한다.

③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과목은 교과과정표에 지정된 학년 및 학기에 수강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특히 3,4학년 학생은 수강신청시 전학년 성적표를 확인하여 교양필수, 전공필수, 필수선택 및 세미나의 이수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⑤ 모든 학생은 매학기 최대 신청학점으로 2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재수강과목 및 교직과목, 자유선택과목의 학점은 최대 신청 학점수에 가산하지 않는다.

⑥ 수강신청기간 만료 후, 수강신청확정서를 교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신청과목의 변경) ① 수강신청기간 만료 후 강의시간 변경, 수강생 조정 및 폐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을 허가한다.

② 수강과목의 변경은 수강신청기간 만료 후 일주일 이내에만 허가한다.

제10조(수강과목의 취소) ①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과목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과목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허락을 받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의 취소는 매학기 수업시작일로부터 4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11조(재수강신청) ① 미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에 대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재수강신청서를 수강신청 기간 내에 교학과로 제출한다.

② 재수강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12조(재이수) ① 이미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의 재이수는 C+이하의 교과목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4.10.11]

② 교과목의 성적은 재이수한 성적을 최종성적으로 한다.

③ 동일 교과목의 재이수는 1회에 한한다.

④ 재이수 신청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재이수신청서를 수강신청 기간 내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14.10.11]

제14조(세미나) ① 학생은 3,4학년 동안 세미나 2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② [삭제 2010.9.1]

③ [삭제 2010.9.1]

④ 각 세미나의 참가학생은 최대 12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교직과정) ①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2학년 개시 전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하고 2학년 과정에 개설된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은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학업성적 70% + 학업계획서 10% + 면접 30%를 반영한 성적순으로 2학년 종료 시까지 선발한다. [개정 2011.3.1, 2012.3.1, 2015.12.24]

③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과정 승인인원 범위 이내에서 선발하며, 선발된 인원은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성적기준은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3.1]

⑤ 교육실습은 학교현장실습 2학점(4주)과 교육봉사활동 2학점(60시간 이상)으로 하며, 그 외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관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1]

⑥ 교직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직과정운영규정」에 따른다.

⑦ 교원자격증의 자격증별 및 표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자격증별: 「중등학교 2급정교사」, 표시과목: 「종교」】

⑧ 교직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6조(청강) ① 본교 학생이 아닌 자나 본교 대학원생 또는 본교 휴학생이 어떤 교과목의 청강을 원할 때, 본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담당교수의 동의를 얻어 교학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본교 학생이 아닌 자가 청강을 원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이거나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그렇지 못할 경우 교학처장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청강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개강 후 2주내에 청강신청서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청강생의 수강신청은 학기당 4과목 이내로 제한한다.

⑤ 외부 청강생이나 휴학중인 청강생은 청강 교과목에 대해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는 따로 정한다.

⑥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성적증명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단, 교학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성적증명서 발급을 허락할 수 있다.

⑦ 청강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교 학칙과 학부시행세칙을 적용하며, 규정된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본교 학생의 수업 및 학생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청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시험, 성적평가, 학사경고, 유급, 졸업

제17조(시험) 시험은 전 교과목에 대하여 매학기 정기시험으로서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실시하되, 중간시험은 교과목에 따라 연구보고서나 구두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과목에 따라 임시시험을

○ 행할 수 있다.

제18조(재시험) ① 학기말 성적이 낙제인 경우 1회의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재시험으로 취득한 성적은 C급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재시험은 방학 후 3주 이내에 실시한다.

제19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가 소정양식의 추가시험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할 경우, 교학처장은 1회에 한하여 추가시험 응시를 허락할 수 있다.

② 추가시험 성적은 B급을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다.

제20조(성적평가) ① 교과목별 성적 평가 등급은 A+, A, B+, B, C+, C, D+, D, F로 한다([별표 I] 참조).

②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1조(학사경고) ① 학칙 제42조에 의거 매학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경고를 하며, 연속3회 또는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가) [삭제 2004.3.1]

(나) 한 과목이라도 낙제한 자

② 취득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신청서를 교학과에 제출·재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유급) ① 학칙 제43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한다.

(가) [삭제 2004.3.1]

(나) 학기말 평균 성적이 60점 미만인 자 혹은 두 과목 이상 낙제한 자 [개정 2004.9.1]

(다) 시행세칙 제23조 제2항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자 [개정 2004.9.1]

② 유급은 재학중 1회에 한하며 두번째 유급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한다.

③ 유급은 학년 유급을 적용하며, 전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 2009.9.1]

제23조(부정행위) ①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은 학칙 제62조에 따라 징계한다.

(가) 시험중 부정직한 행위

(나) 수업시간에 대리출석 또는 대리 점호에 응하거나 이를 의뢰하는 행위

(다) 기타 성적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행위

②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해당학기 전과목을 득점할 수 없으며, 1개월 이상 무기정학에 처한다.

제24조(졸업) ① 학생은 학부에 개설된 필수선택과목 중 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3학년 이상의 학년에서 세미나 2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필수과목에서 낙제된 과목을 가지고 진급한 자는 소정의 학점을 보충하지 않고는 졸업할 수 없다.

③ 본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④ 졸업생으로서 학칙 제40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한다.

○ ⑤ 4년간 학부성적 최우수자(1등)에게는 서울대교구 교구장상(또는 이사장상)을 수여하고, 4년간 학부성적 우수자(2등)에게는 총장상을 수여한다. 부총장상은 학생회장으로 봉사한 공로가 있는 학생

에게 수여한다.

제5장 결석, 휴학, 복학, 제적

제25조(결석) ① 유고결석사유 [별표II] 에 의하여 결석하는 경우는 유고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사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양식의 결강승인서와 함께 교학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따)~(아)는 지도교수와 교학부처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가)~(아)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기자의 신문발간의 작업, 각 동아리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및 집회,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제26조(결석과 수험자격) ① 무고결석(결강승인서 제출포함)으로 수업시간의 1/4이상을 결석할 경우 해당과목의 수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7.8.3]

② 유고결석사유 [별표II] 에 의해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을 경우 발생 즉시 본인(보호자)이 직접 담당교수 및 교학과에 연락하고 결강승인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은 담당교수와 상의하여 추가시험기회를 부여 받는다. [개정 2017.8.3]

③ 일반학생의 조기 취업과 관련하여 학칙 제38조에 의거 수업시간의 1/4이상 결석하더라도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8.3]

제27조(일반휴학) ① 질병, 가정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계속하여 등교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서를 제출, 신학부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원서는 본인의 도장날인 또는 서명으로 작성하고, 승인자의 승인을 얻어 학생증과 함께 교학과에 제출한다.

③ 휴학 사유가 질병일 경우 종합병원 또는 교의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입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단, 징집 및 질병일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휴학원서 제출기간) ① 휴학원서는 1학기 휴학인 경우 1월 10일, 2학기 휴학인 경우 7월 10일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개강 4주(28일) 이내까지 허가한다.

②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휴학원 제출은 개강 후 4주 이내이며, 초과시 교학과에서는 자동 휴학처리한다.

제29조(휴학기간 및 횟수) ① 휴학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으로 하며, 휴학기간 만료 후 부득이한 사유로 복학이 불가능할 경우 재휴학원을 제출하여 휴학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② 재학기간 중 휴학기간은 통산 3년(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편입학생의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4.16.]

③ 군입대휴학, 수련휴학(Practicum),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9.4.16.]

제30조(군입대휴학) ① 휴학 또는 재학 중 군입대를 하게 될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 학생증을 첨부하여

○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해학기 수업주수의 4분의 3이 경과한 후 군입대(지원입대 포함)휴학을 하는 경우 사전에 학기 말 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다.

제31조(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학원서는 본인의 도장날인 또는 서명으로 작성하고, 승인자의 승인을 얻어 교학과에 제출한다.

③ 복학원서는 1학기 복학인 경우 1월 10일, 2학기 복학인 경우 7월 10일까지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개강 4주(28일) 이내까지 허가한다.

④ 질병으로 휴학한 자 중 정신질환으로 휴학하여 복학하는 자는 교의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복학학년 및 학기) 휴학하였던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휴학 당시의 학년 및 학기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제적) 제적이라 함은 자퇴와 학칙 제62조에 따른 퇴학을 지칭한다.

제34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본인의 도장날인 또는 서명으로 작성하고, 승인자의 승인을 얻어 학생증과 함께 교학과에 제출한다.

제6장 졸업논문

○ 제35조(논문제출자격) 8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예정자에게 논문제출자격을 부여한다.

제36조(지도교수) ① 학생은 논문제목이 명기된 지도교수확인서를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교학과에 제출한다. [개정 2012.3.1]

② 지도교수 변경시에는 논문지도변경승인서를 교학과에 제출한다.

③ 본 교정에서 강의하는 모든 교수(시간강사포함)는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④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작성의 전과정을 지도한다.

제37조(제출기한) 논문제출마감은 전기졸업예정자는 11월 30일, 후기졸업예정자는 5월 31일이며, 지정된 규격 및 양식에 따라 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논문 2부를 교학과에 제출한다.

제38조(논문평가) ① 논문평가등급은 A+, A, B+, B, C+, C, D+, D, F로 하며 D급 이하는 불합격으로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표(성적)를 학기말 성적 제출 마감일까지 교학과에 제출한다.

③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까지 논문을 재 제출할 수 있으며, 졸업논문이 합격된 학기에 학위증서를 수여받는다.

제39조(졸업논문 합격자격연장)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이 어떤 사유로 해당학기에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논문합격 자격을 1년간 연장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의 경우에는 제대후 1년까지로 한다.

○ 제7장 납입금

○ 제40조(납입금 납입의무)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에 수업료 등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업료, 기성회비,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납입금 분납) ① 납입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입학과 편입학 첫 학기에는 분할납부할 수 없다.

② 분할납부 횟수는 학기별 4회 이내에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5.3.25]

제42조(납입금 감면 및 반환) ①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정학, 유급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② 휴학 또는 자퇴(입학포기)한 자의 납입금은 본교 「수업료 및 납입금 반환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08.3.1., 2019.4.16.]

부칙

○ 제1조(시행일) ① 이 시행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변경 시행세칙(제7조,제19조)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변경 시행세칙(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2조)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2조는 2004학년도 제2학기말 성적사정 때부터 적용한다.

④ 본 변경 시행세칙(제6조, 제42조)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시행세칙 제정에 따라 기존 관련 제규정은 폐지한다.

② 이 시행세칙 제정 이전의 입학자 중 사안에 따라 입학당시의 시행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입학당시 시행세칙의 적용여부는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14조, 제15조)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직과정 이수율 위한 성적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본 개정 시행세칙 제1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직과정 이수율 위한 성적기준은 전공 평균성적 및 교직과목별 성적 각각 80점 이상으로 한다.

○ 제3조(교육실습에 대한 경과조치) 본 개정 시행세칙 제1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교육실습은 4주간의 교육실습(2학점)으로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7조, 제15조)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12조, 제13조)은 201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41조)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4조, 제7조, 제7의 1조, 제15조)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26조)은 2017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2조)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시행세칙(제29조, 제42조)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 1> 성적평가 등급표

등급	평점	실점
A+	4.5	95 - 100
A	4.0	90 - 94
B+	3.5	85 - 89
B	3.0	80 - 84
C+	2.5	85 - 79
C	2.0	70 - 74
D+	1.5	65 - 69
D	1.0	60 - 64
F	0.0	0 - 59

<별표 2> 유고결석사유

유고결석사유	결석허용한계
(가)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동등한 사고	3일
(나) 3일 이상 입원치료 기간	3주이내
(다) 질병검사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라)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	해당기간
(마) 졸업여행	해당기간
(바) 정부기간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해당기간
(사)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아) 신문발간을 위한 정·부편집장의 긴급작업	해당기간

<별표 3> 납입금 반환 기준 [삭제 2019.4.16.]